

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6호, 2004. 9. 7)

총 무 위 원 회
2004. 9. 17

1. 심사 경과

- 가. 2004. 9. 7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9. 7 :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(사회복지과장 임귀자)

가. 폐지 이유

-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함으로써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사천시지역의료보험지원조례를 폐지함.

3. 관계 법령

- 국민건강보험법.

4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조례는 사천시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, 읍·면·동 및 통·리·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
-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문개정(1999. 2. 8)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므로써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 음